

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

성 북 구 의 회

# - 목 차 -

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(총괄) . . . . .	2
● 운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. . . . .	8
●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. . . . .	14
●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. . . . .	21
● 행정기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. . . . .	28

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,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## ■ 감 사 기 간

- 2015. 6. 17. ~ 2015. 6. 25.(9일간)

## ■ 감 사 주 체

- 4개 상임위원회
  - 운영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도시건설위원회, 행정기획위원회

## ■ 감사대상기관

- 운 영 위 원 회 : 의회사무국
- 보건복지위원회 : 교육문화복지국, 보건소, 보문동, 종암동, 성북문화재단
- 도시건설위원회 : 도시환경국, 안전건설교통국, 안암동, 장위제1동
- 행정기획위원회 : 기획경제국, 행정국, 마을담당관, 감사담당관,  
성북구 도시관리공단, 돈암제2동, 월곡제2동

## ■ 감사대상사무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
## ■ 감 사 장 소

- 성북구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, 성북구청, 도시관리공단 및 주민센터

## ■ 위원회별 편성내역

- 감사위원편성

위 원 회 별	감 사 위 원	인 원
운 영 위 원 회	정형진 위원장 외 8인	9명
보건복지위원회	진선아 위원장 외 6인	7명
도시건설위원회	권영애 위원장 외 6인	7명
행정기획위원회	김일영 위원장 외 6인	7명

- 주민센터 감사반

위 원 회 별	감 사 위 원	감사대상 주민센터	인 원
보건복지위원회	진선아 위원장 외 6인	보문동, 종암동	7명
도시건설위원회	권영애 위원장 외 6인	안암동, 장위제1동	7명
행정기획위원회	김일영 위원장 외 6인	돈암제2동, 월곡제2동	7명

## ■ 감사 일정

○ 강 평 : **2015. 6. 25(목) 14:00**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
위원회별	감사 일정		감사 대상 기관	감사장소
	월 일	시 간		
운영	6.23 (화)	10:00 ~ 18:00	성북구의회	성북구의회 제 4 회의실
	6.24 (수)	10:00 ~ 13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
	6.25 (목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보건복지	6.17 (수)	10:00 ~ 14:00	교육문화복지국 (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)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		14:00 ~ 18:00	교육문화복지국 (교육청소년과, 어르신복지과)	
	6.18 (목)	10:00 ~ 14:00	교육문화복지국 (여성가족과)	
		14:00 ~ 18:00	교육문화복지국 (문화체육과, 성북문화재단)	
	6.19 (금)	10:00 ~ 14:00	보건소	
	6.22 (월)	10:00 ~ 14:00	보문동 주민센터	보 문 동 주민센터
		14:00 ~ 18:00	종암동 주민센터	종 암 동 주민센터
	6.23 (화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4 (수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	6.25 (목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도시건설	6.17 (수)	10:00 ~ 18:00	도시환경국 (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)	성북구의회 제 3회의실
		6.18 (목)	10:00 ~ 14:00	
	14:00 ~ 18:00		안전건설교통국 (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)	
	6.19 (금)	10:00 ~ 18:00	안전건설교통국 (도로시설과, 안전치수과, 공원녹지과)	
	6.22 (월)	10:00 ~ 14:00	안암동 주민센터	안 암 동 주민센터
		14:00 ~ 18:00	장위제1동 주민센터	장위제1동 주민센터
	6.23 (화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4 (수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
6.25 (목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	

행정기획	6.17 (수)	10:00 ~ 18:00	기획경제국 (기획예산과, 사회적경제과, 일자리 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)	성 북 구 청 성북아트홀
	6.18 (목)	10:00 ~ 18:00	행정국 (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민원여권과, 지적과)	
	6.19 (금)	10:00 ~ 13:00	마을담당관, 감사담당관	
		14:00 ~ 18:00	성북구 도시관리공단	
	6.22 (월)	10:00 ~ 13:00	돈암제2동 주민센터	돈암제2동 주 민 센 터
		14:00 ~ 18:00	월곡제2동 주민센터	월곡제2동 주 민 센 터
	6.23 (화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4 (수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
	6.25 (목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## ■ 감사방법 및 요령

-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· 청취 및 자료제출요구,  
시책 질의 · 답변 순으로 실시
-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, 현지 확인 병행

## ■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(금) 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 
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## ■ 감사진행 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 요구사항 보고·청취
- 질의·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## ■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(조례 제6조)

## ■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## ■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## 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
  - 각 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을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  -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및 본회의 의결
- 보고서에는 감사실시 경과와 시정, 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감사 의견 등을 포함

## ■ 강 평

- 일 시 : **2015. 6. 25(목) 14:00**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

## ■ 행정 사항

-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(금) 까지
-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보조직원 : 각 위원회 계획에 따라 시행

붙임 :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안) 1부.





2015년도

#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

#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## 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’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.

## 2. 감사일정 및 장소

- 감사일시 : 2015. 6. 23(화) 10:00
- 감사장소 :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실 (제4회의실)
-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: 2015. 6. 24(수) 10:00
- 행정사무감사 강평 : 2015. 6. 25(목) 14:00

## 3. 감사대상기관 : 성북구의회 사무국

## 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정형진 위원장 외 8명
- 사무보조 : 정진만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1, 직원1, 속기사2)

## 5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 위원회 사무

## 6. 감사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, 답변 및 현장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## 7. 감사방법

- 자료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
-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## 8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(금) 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## 9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(조례 제6조)

## 10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## 11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## 12. 강 평

- 일 시 : 2015. 6. 25(목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## 13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
- 작성방법
 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
 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
  - 본회의 의결 (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)

따로붙임 1) 선서문

2)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1부. 끝.



#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

소속위원회	운영위원회	의원명	(인)
해당부서	요 구 서 류 ( 자 료 명 )		비 고
			



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[보건복지위원회 소관]



## 보건복지위원회

#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## 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

## 2. 감사기간

- 2015. 6. 17(수) ~ 2015. 6. 25(목) [9일간]

## 3. 감사대상기관

- 교육문화복지국 : 복지정책과, 교육청소년과, 생활보장과, 어르신복지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, 성북문화재단
- 보건소 : 건강정책과, 건강관리과, 의약과, 보건위생과, 보건지소
- 동(洞) 주민센터 : 보문동, 종암동 주민센터

## 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진선아 위원장 외 6명.
- 사무보조 : 임선악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1, 직원1, 속기사2)

## 5. 감사장소

-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



## 6. 감사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일	시간		
6. 17(수)	10:00 ~ 14:00	교육문화복지국 (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)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	14:00 ~ 18:00	교육문화복지국 (교육청소년과, 어르신복지과)	
6. 18(목)	10:00 ~ 14:00	교육문화복지국 (여성가족과)	
	14:00 ~ 18:00	교육문화복지국 (문화체육과, 성북문화재단)	
6. 19(금)	10:00 ~ 14:00	보건소	
6. 22(월)	10:00 ~ 14:00	보문동 주민센터	
	14:00 ~ 18:00	종암동 주민센터	
6. 23(화)	10:00 ~ 18:00	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6. 24(수)	14:00 ~ 18:00	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6. 25(목)	14:00 ~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## 7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.
-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.

## 8. 감사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.
-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.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 요구사항 보고 청취.
  -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
- 질의, 답변 및 현장 확인.
- 감사결과 강평.
- 감사종료 선언.

## 9. 감사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.

## 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일까지
  -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서식(별첨)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
## 11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.
-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.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(조례 제6조)

## 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.

## 13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.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.

## 14. 강 평

- 일 시 : 2015. 6. 25(목) 14:00.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.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.

## 15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.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한다.
- 작성방법
 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.
 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.
  - 본회의 의결 (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)

따로붙임 1) 선서문

2)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1부. 끝.







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도시건설위원회 소관)



## 도 시 건 설 위 원 회

#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## 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

## 2. 감사기간

○ 2015. 6. 17(수) ~ 2015. 6. 25(목) [9일간]

## 3. 감사대상기관

- 도시 환경 국 : 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 
도시디자인과, 환경과
- 안전건설교통국 :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도로시설과,  
안전치수과, 공원녹지과
- 동(洞) 주민센터 : 안암동, 장위제1동

## 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권영애 위원장 외 6명
- 사무보조 : 김동성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 1, 직원 1, 속기사 2)

## 5. 감사장소

-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

## 6. 감사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일	시간		
6.17(수)	10:00 ~ 18:00	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(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)	성북구의회 제3회의실
6.18(목)	10:00 ~ 14:00	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(도시디자인과, 환경과)	
	14:00 ~ 18:00	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(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)	
6.19(금)	10:00 ~ 18:00	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(도로시설과, 안전치수과, 공원녹지과)	
6.22(월)	10:00 ~ 14:00	안암동 주민센터	안암동 주민센터
	14:00 ~ 18:00	장위제1동 주민센터	장위제1동 주민센터
6.23(화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6.24(수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3회의실
6.25(목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회의장

## 7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



## 8. 감사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, 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## 9. 감사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## 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(금) 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## 11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(조례 제6조)

## 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### 13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### 14. 강 평

- 일 시 : 2015. 6. 25(목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### 15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(조례 제9조)
- 작성방법
 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
 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
  - 본회의 의결 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[붙임] 1. 선서문

2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. 끝.

# 선 서

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  
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,  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 
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 
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 
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5년 6월 일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**



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



## 성 북 구 의 회

( 행정기획위원회 )

#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

## 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규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.

## 2. 감사기간

- 2015. 6. 17(수) ~ 2015. 6. 25(목) [9일간]

## 3. 감사대상기관

- 기획경제국 : 기획예산과, 사회적경제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
- 행정국 :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민원여권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지적과
- 마을담당관 · 감사담당관
- 성북구도시관리공단
- 주민센터 : 돈암2동, 월곡2동

## 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김일영 위원장 외 6명
- 사무보조 : 김용우 전문위원 외 4명(담당1, 직원1, 속기사2)

## 5. 감사장소

- 성북구청, 도시관리공단, 해당동 주민센터

## 6. 감사 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 일	시 간		
6.17(수)	10:00~ 18:00	- 기획경제국 (기획예산과, 사회적경제과, 일자리 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)	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
6.18(목)	10:00~ 18:00	- 행정국 (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민원여권과, 지적과)	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
6.19(금)	10:00~ 13:00	- 마을담당관·감사담당관	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
	14:00~ 18:00	- 성북구도시관리공단	도시관리공단 본 부
6.22(월)	10:00~ 13:00	- 돈암2동 주민센터	해 당 주 민 센 터
	14:00~ 18:00	- 월곡2동 주민센터	
6.24(수)	14:00 ~	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2회의실
6.25(목)	14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## 7. 감사 실시 범위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

## 8. 감사진행 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·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## 9. 감사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## 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5. 5. 8(금)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-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서식(별첨)

## 11. 행정사무감사의 한계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(조례 제6조)

## 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

### **13. 감사장의 주의의무**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### **14. 강 평**

- 일 시 : 2015. 6. 25(목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### **15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**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(조례 9조)
- 작성방법
 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 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채택
  - 본회의 의결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#### **첨부 1. 선서문**

#### **2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서식 1부. 끝.**

# 선 서

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,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5 년 6 월 일

직위 : 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

